#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 총동문회 시행세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UMBA 총동문회 회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내부 규정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장 KUMBA 총동문회 경조사 지원 기준

제3조(기준)

KUMBA 총동문회의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 대한 경조사 지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한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경조기준</th></tr>
<tr><td rowspan="2">결혼축하</td><td>정회원</td><td rowspan="2">본인결혼<br>자녀결혼</td><td>성하기 + 축하화환<br>(2주전 예약 필수)</td></tr>
<tr><td>준회원/<br>예비회원</td><td>성하기<br>(2주전 예약 필수)</td></tr>
<tr><td rowspan="2">조문지원</td><td>정회원</td><td rowspan="2">본인사망<br>배우자사망<br>본인부모사망<br>배우자부모사망</td><td>근조기 + 조화</td></tr>
<tr><td>준회원/<br>예비회원</td><td>근조기</td></tr>
</table>

## 제3장 KUMBA 총동문회 동호회 운영계획에 관한 기준

제4조(기준)

① 총동문회는 원우회 모임의 활성화, 동문회 모임의 활성화, 원우 및 동문회 모임의 활성화, KUMBA와 관련된 인원 모두의 친목을 위하여 KUMBA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친목모임을 독려하고 2항이 아닌 경우 친목 모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 KUMBA 및 총동문회를 포함하여 관련된 인원의 친목모임을 위해 개별 집합, 모집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총동문회는 어떠한 방해 및 금지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모임의 경우 총동문회는 KUMBA 및 총동문회와 무관한 모집으로 판단하여 총동문회는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모임
2.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임
3. 민법을 포함하여 법률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모임
4.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정당, 정치인을 위한 활동
5. 모임에 가입하기 위한 특정인을 거부 또는 과거 거부 사실이 있는 활동모임

6. 단순 음주가무를 위한 모임

③ 총동문회는 친목모임(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1. 총동문회 차원의 동문회 모집 및 신청서의 확인
2. 신청서 확인 이후 총동문회 차원에서 모임의 승인 및 관리
3. 인정된 모임 활성화를 위한 회비 지원 (반기별 5만원)
4. 동호회에는 졸업생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동호회장이 졸업생일 필요는 없다.
5. 동호회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총동문회는 친목모임(동호회)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총동문회 사무국을 통한 동호회 신청 접수 및 관련 질의 대응
2.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매 반기별 촉진장려금 5만원 지원
3. 우수 동호회 사례 발굴을 위해 매 반기별 동호회 사례 공유

⑤ 친목모임(동호회) 신청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신청서를 제출한다.

1. 동호회 발의자 및 발의자의 신분 (기수, 이름, 연락처)
2. 동호회 회원의 신분 (기수, 이름, 연락처)

⑥ 동호회 지원금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1. 지원금은 반기별로 동호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2. 지원금 신청은 각 반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3. 지원금 사용 내역은 다음 반기 시작 전까지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4.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동호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총동문회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이사회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⑦ 기타 KUMBA 및 총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요청

## 제4장 KUMBA 총동문회 회비 납부에 관한 기준

제5조(회비 납부 및 정회원 자격)

①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기 위한 회비의 납부 방식에 따른 금액, 납부 기한 및 정회원 자격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납부기한 | 납부 주기 | 정회원 자격 및 혜택 유효 기간 |
|---|---|---|---|---|
| 연회비 | 100,000원 | 매년 12월 말까지 | 연 1회 | 납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평생회비 | 1,000,000원 | 수시 | 일시납 | 납부 즉시부터 영구적으로 |

② 찬조금 및 물품 기부의 회비 인정

1. 연간 100,000원 이상의 찬조금을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물품 기부의 경우, 그 가치는 이사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한다.
3. 찬조금 또는 물품 기부로 인정받은 연회비는 기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③ 정회원이 되려면 제1항의 회비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비를 납부하거나, 제2항에 따른 찬조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여야 한다.

④ 연회비 납부에 관한 특별 규정

1. 연회비는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당해 연도 중 납부한 연회비는 납부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3. 연회비 납부는 통장 이체만 허용하며, 이체 시 반드시 기수와 이름, 그리고 정회원 권리 행사 연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는 회비가 적용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4. 권리 행사 연도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납부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를 권리 행사 기간으로 간주한다.
5. 동문회는 매년 11월부터 회원들에게 다음 해 정회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회비 납부를 안내한다.

⑤ 평생회비 납부자의 경우, 납부 즉시부터 영구적으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제5장 KUMBA 총동문회 재정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재정 운영 관리)

① 재정 검토 및 감사
1. 감사는 반기별로 재정 운영 상태를 검토한다.
2. 정기 감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3. 감사 결과는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기록 관리
1. 모든 재정 거래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한다.
2. 재정 기록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내용, 승인자를 명시한다.
3. 지출 증빙서류는 건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 정보 공개
1. 연간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는 총회 자료에 포함하여 공개한다.
2. 회원은 재정 관련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재정 정보 공개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한다.

④ 보고 절차
1. 재무이사는 월별 재정 현황을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2. 분기별 재정 현황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연간 재정 운영 결과는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6장 선거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 후보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정기회의는 선거 일정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 일정의 수립 및 공고
2. 후보자의 등록 접수 및 자격 심사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관리
4. 선거 운동 방법의 제한과 위반 행위 단속
5. 투표 및 개표의 관리
6. 당선인의 확정 및 공고
7.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 수행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선거 관리 규칙의 제정 및 시행
2. 후보자 등록의 수리 또는 거부
3. 선거 운동 방법의 제한
4.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5.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후보자 등록 취소
6. 선거 무효 또는 재선거 실시 요청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후보자는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관리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후보자 등록의 승인
3. 선거 운동 방식의 결정
4. 투표 및 개표 방식의 결정
5. 당선인의 확정
6.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

②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2.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③ 의결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1조(선거 절차)

① 선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온라인 투표 실시

가. 총회 개최 7일 전부터 총회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진행
나. 모든 투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하며, 이는 총회 참석자도 동일하게 적용
다. 총회 현장에서는 투표 참여를 위한 기술 지원 제공

2. 투표 관리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나. 회원 본인 인증 후 전자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 진행

3. 결과 확정 및 공표
가. 지정된 투표 종료 시간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 집계
나. 투표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 확정
다. 총회에서 선거 결과 공표

제12조(온라인 투표 시스템)

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
2. 1인 1표 원칙 보장
3. 투표의 비밀 보장
4. 실시간 투표 현황 확인
5. 데이터 위변조 방지
6. 투표 결과의 즉시 집계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점검
2. 투표 참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3.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4. 투표 데이터의 백업 및 보관

## 제7장 시행세칙의 개정

제13조(시행세칙의 개정)

①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개정된 시행세칙은 즉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한다.
③ 시행세칙 개정 사항은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시행을 보류한다.

제14조(개정 절차)

①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발의한다.
② 이사회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결한다.
③ 의결된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④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제1조(개정일 및 시행일)

본 세칙은 202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